## 행정명령서

- 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  - 가. 처분대상: 전라북도 전역(해당 시설·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)
  - 나. 처분기간 : 2021년 8월 23일 0시 ~ 2021년 9월 5일 24시(2주간)
  - 다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(붙임 참고)
    - 전주, 군산, 익산, 완주(혁신도시), 무주(무풍면)은 3단계, 그 외 11개<sup>\*</sup> 시군은 2단계 적용
    - \* 정읍, 남원, 김제, 완주(혁신도시외지역), 진안, 무주(무풍면외지역), 장수, 임실, 순창, 고창, 부안
    - ※ 무주군(무풍면) 8월29일까지 금번 전라북도 방역조치 적용하되, 이후 단계 및 방역조치는 자체 행정명령 추진
  - 라. 처분이유
    - 정부는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높은 전염력과 중증도 비율 등 특성을 감안하고 역학대응의 어려움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
  - 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각호
  - 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
  - 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제2항 ,제4항
  - 아. 시설폐쇄·운영중단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3항 부터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
- 2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제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- 3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4. 처분 총괄담당자

이 름	소 속	직 급	연 락 처
김성국	전북도청 사회재난과	지방공업사무관	063-280-3797
김종수	전북도청 사회재난과	지방시설주무관	063-280-3823

2021. 8. 20.

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

## 참고1

## 전라북도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 ['21.8.23~9.5]

- ▶ '자율과 책임을 기반'으로 각 시·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'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'
- ▶ 각 시·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,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

※ 시·군 별도의 행정명령 및 방역조치 효력을 우선시 함

<u>※ 시·군 멸노</u>	의 행성명령 및 방역조지	요덕을 우선시 암			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
단계 명칭	■지속적 억제상태 유지	■지역 유행/인원 제한	■권역 유행/모임 금지	■ 대유행/외출 금지	
기준	■인구 10만명당 1명미만 (주간평균)	■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)	■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 준 초과)	■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(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 준 초과)	
	▶전국: 500명 미만 ▶수도권: 250명 미만	▶전국: 500명 이상 ▶수도권: 250명 이상	▶ 전국: 1,000명 이상 ▶ 수도권: 500명 이상	▶ 전국: 2,000명 이상 ▶ 수도권: 1,000명 이상	
모임	■ 4명까지 모임 가능(5인 이상시적모임 금지)  * (예외) 예방접종 완료자(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), 동거가족·돌봄(아동·노인·장애인 등), 임종을 지키는 경우,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,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,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※ 직계가족 4인까지			■ <b>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</b> (3인 이상 시적모임 금지)	
행사	■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	■ 100인 이상 행사 금지	■50인 이상 행사 금지	■행사 금지	
집회	■5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100인 이상 집회 금지	■ 50인 이상 집회 금지	■1인 시위 외 집회 금지	
1그룹 시설					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
0 = 11 11	■시설면적 6m² 당 1명 (클럽 나이트 8m²당 1명)	■시설면적 8m'당 1명(2~3 (클럽 나이트 10m'당 1명/2~	-	■ 집합금지	
유흥시설	■운영시간 제한x	■24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■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	
	■(감성주점, 헌팅포차 추가조치)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(1~3단계)				
코미테	■ 시설면적 8m² 당 1명	■시설면적 8m² 당 1명 ■시설면적 10m²당 1명(2~3단계)			
콜라텍 무도장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4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■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■집합금지	
	■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				
홀덤펍	■시설면적 6m² 당 1명	■시설면적 8m²당 1명 (2~3단계)		■ 지하그TI	
홀덤게임장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4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■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■ 집합금지	
2그룹 시설					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
	■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(50m²이상 시설)(1~4단계)				
식당 카페	■운영시간 제한×	■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	■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	■21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* 예방접종 완료자 18시 이후 4인까시사주요2기능(21시까지)	
노래(코인) 연습장	■시설면적 6m² 당 1명	병 ■시설면적 8m²당 1명(2~4단계)		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4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 ■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(3~4단계)		3~4단계)	
	■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	
목욕장업	■ 시설면적 6m² 당 1명 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시설면적 8m²당 1명(2~4단계) ■ 운영시간 제한× ■ 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(3~4단계)			
실내체육시설	■ 분용시한 세환호 ■ 시설면적 6m² 당 1명 (체육도장, GX운동 시설은 4m²당 1명)	■ 군당시인 제안×   ■ 22시이우 군당·이용제인(3~4인계) ■ 시설면적 8m'당 1명(2~4단계) (체육도장, GX운동 시설은 6m'당 1명)		···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x - 수영장은 22시 운영이용제한	■ 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
		■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) 대련, 시합 등) 제한(권고)	지, 사유실 운영금지, 탁구대  (배드민턴, 테니스, 스쿼시시간 이내, 사워실 운영금기)  (실내풋살, 실내농구 등) 시설은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대회금지, 샤워실 운영금의(GX류)음악속도 100~120bp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육도장)상대방과 직접 전시합 등)금지, 샤워실 운영을 사합 등)금지, 샤워실 운영을 사합 등)금지, 샤워실 운영을 사합 등)금지, 샤워실 운영	I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 지 및 안내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배(예:실내풋살 15명) 최과 금지, 하지 및 안내 m 유지(고강도 유산소 운동→저 대체), 샤워실 운영금지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 대편, 금지 이하 유지안내(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체) 샤워실 운영금지	
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	■시설면적 6m² 당 1명	■시설면적 8m'당 1명(2~4단계)			
홍보관	■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 ■ 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(3~4단계)			
3그룹 시설					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
±1.01	■좌석 한 칸 띄우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또는 <u>샤</u> 칼택4㎡당1명(좌석 않는경유)	■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㎡ 당 1명(좌석 없는 경우)	■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 당 1명 (좌석 없는 경우)		
학원	■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
	■(관악기, 노래) 노래부르기, 관익	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(1~4단	[계], (기숙형)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	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(2~4단계)	
		■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			
	■좌석 띄우기없음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(정규공연시설) 기본방역수칙	적용	
영화관 공연장			■(정규공연시설 외 공연) 6m'당 1명+최대 2,000명 이내	■정규공연시설 외 공연금지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
	■ 상영관,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	
독서실	■좌석 한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(1~4단계)				
스터디카페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
결혼식장	■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m²당1명	■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+ 웨딩홀별 4m²당 1명	■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+ 웨딩홀별 4m²당1명		
장례식장	■ 빈소별 4m² 당 1명	■빈소별100인 미만 + 4m²당1명	■ 빈소별 50인 미만 + 4m*당1명		
놀이공원	■ 입장인원 제한×	■수용인원의 70%	■ 수용인원의 50%(3~4단계)	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
워터파크	■ 입장인원 제한×	■수용인원의 50%	■ 수용인원의 30%(3~4단계)		
—	■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
오락실 멀티방	■시설면적 6m² 당 1명	■시설면적 8m² 당 1명(2~4단계)			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
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
상점 마트	■ 판촉용 시음,시식,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, 이용자 휴게공간 이용, 집객행사 금지(2~4단계) ■출입명부 작성·관리(3,000㎡ 이상 대규모점포, 3~4단계)				
백화점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×	■운영시간 제한x	■ 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
카지노	<ul><li>■수용인원의 50%</li><li>■수용인원의 30%(2~4단계)</li></ul>				
(내국인)	■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
PC방	■좌석 띄우기없음 ■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)(2~4단계)				
PCS	■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 운영시간 제한×	■22시이후 운영·이용제한	
		기타 시설			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
스포츠경기	■(실내)수용인원의 50% (실외)수용인원의 70%	■(실내 <del>)수용</del> 인원의 30% (실외) <del>수용</del> 인원의 50%	■(실내)수용인원의 20% (실외)수용인원의 30%	■무관중 경기	
(관람)장 	■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(1~4단계), ■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3단계)				
경륜·경정 경마장	■수용인원의 50%	■수용인원의 30%	■수용인원의 20%	■무관중 경기	
박물관·미술관 과학관	■시설면적 6㎡ 당 1명	■시설면적 6m² 당 1명의 50%	■시설면적 6m² 당 1명의 50%	■시설면적 6m² 당 1명의 30%	
실외체육시설	■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(3단계) *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풋살15명) 초과금지(4단계 시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) ■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(1~4단계)				
숙박시설	■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(직계가족 예외)	■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(직계가족 예외)	■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■ 전 객실의 3/4운영	■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■ 전 객실의 2/3운영	
	■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(홀대여 제외) (2~4단계)				
<b>파티룸</b> (광간대)업	■시설면적 6m² 당 1명	■시설면적 8m² 당 1명 (2~4단계)			
도서관	■수용인원의 70%	■ 수용인원의 50%(2~4단계)			
키즈카페	■ 시설면적 4m² 당 1명	■시설면적 6m² 당 1명 (2~4단계)			
전시회·박람회	■시설면적 4m² 당 1명	■ 시설면적 6m <sup>2</sup> 당 1명 (2~4단계) ■ 사전예약제 운영,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인 이내 (3~4단계)			
마자안마소	■ 시설면적 6m² 당 1명	■ 시설면적 8m² 당 1명(2~4단계)			
이미용업	■ 시설면적 6m² 당 1명	■시설면적 8m² 당 1명(2~4단계)			
국제회의	■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	■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(2~3단계),			
학술행사		■(학술행사)동선이 분리된 공간마다 49인까지 가능(3단계), 전체 49인까지 가능(4단계) ■(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) 기본방역수칙 적용(1~4단계)			
종교시설	■수용인원의 50% (좌석 한 칸 띄우기)	■수용인원의 30% (좌석 두 칸 띄우기)	■수용인원의 20% (좌석 네 칸 띄우기)	■ 수용인원의 10%(최대99명)	
	■ 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자제 * 500인 이상 모임·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	■ 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기능(100인 미만)	■ 모임/행사, 식사, 숙박 금지 * 실외행사 가능(50인 미만)	■ 모임/행사 식사 숙박 금지	
학교	■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	· · ·	■ 밀집도 1/3~2/3 (고등학교 2/3 이내)	■ 원격수업	
※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,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(교육부) ※ 4단계 지역은 ▲직계가족모임 ▲사적모임·행사 ▲종교활동 및 성가대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전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					

※ 4단계 지역은 ▲직계가족모임, ▲사적모임행사, ▲종교활동 및 성가대 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